직장가입자의 종류와 기준

# 목차

1. 개요

2. 본문

2-1. 1. 직장가입자의 종류

2-2. 2. 적용 대상자

2-3. 3. 근로자 및 사용자

2-4. 4. 공무원 및 교직원

2-5. 5. 비상근 근로자

# 1. 개요

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, 사용자, 공무원 및 교직원을 말한다. 그러나 일부 예외가 있다.

# 2. 본문

## 2-1. 1. 직장가입자의 종류

직장가입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 
  
1. 의의: 건강보험에서는 사회보험적용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유공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입자가 되도록 하였다.

조사가 필요한 내용

직장가입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 
  
1. 의의: 건강보험에서는 사회보험적용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유공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입자가 되도록 하였다.

가입자는 이 법에 따르는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로 성질상 자연인을 말하는데, 건강보험에서는 사회보험적용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유공자 등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입자가 되도록 하였다.

따라서 법제 6 조 제 2 항 각 호 및 영 제 9 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서 적용 제외되는 자와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.

임의계속가입자는 소정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(법 제 110 조 제 2 항) 임의계속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.

따라서 법제 6 조 제 2 항 각 호 및 영 제 9 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서 적용 제외되는 자와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.

임의계속가입자는 소정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(법 제 110 조 제 2 항) 임의계속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.

따라서 법제 6 조 제 2 항 각 호 및 영 제 9 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서 적용 제외되는 자와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.

임의계속가입자는 소정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(법 제 110 조 제 2 항) 임의계속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.

## 2-2. 2. 적용 대상자

10) 고등 교육 법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, 법규 0213-106(2004. 4.16.) 자문 회신, 보건 복지 부 보정 65710-86(2003. 1.23.) 질의 회신

조사가 필요한 내용

이

법

제

정

당

시

에

는

보

험

관

리

의

어

려

움

으

로

5

인

미

만

의

사

업

장

근

로

자

는

직

장

가

입

자

에

서

제

외

하

였

었

으

나

,

다

른

근

로

자

와

의

보

험

료

부

담

의

형

평

성

문

제

,

영

세

사

업

장

에

고

용

된

근

로

자

의

복

지

확

대

필

요

성

등

을

고

려

하

여

2

0

0

0

년

1

2

월

2

9

일

법

률

제

6

3

2

0

호

에

따

라

2

0

0

1

년

7

월

1

일

부

터

직

장

가

입

자

적

용

대

상

자

를

모

든

사

업

장

의

근

로

자

로

확

대

하

였

다

.

## 2-3. 3. 근로자 및 사용자

모든 사업장의 근로자, 사용자,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
조사가 필요한 내용

근

로

자

와

사

용

자

의

구

분

,

임

의

적

용

사

업

장

,

지

역

가

입

자

## 2-4. 4. 공무원 및 교직원

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로 보지 않는다.

조사가 필요한 내용

공무원의 정의

교직원의 정의

## 2-5. 5. 비상근 근로자

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

조사가 필요한 내용

임

시

교

원

,

조

건

부

교

원

,

기

간

제

교

원

,

강

사

등

은

"

사

립

학

교

교

직

원

연

금

법

"

상

교

직

원

으

로

보

지

만

,

비

상

근

교

직

원

이

아

닌

것

으

로

보

아

야

한

다

.

또

한

,

겸

임

교

원

은

교

직

원

으

로

명

시

되

어

있

고

,

일

정

한

자

격

을

부

여

받

으

며

특

정

한

시

간

에

상

시

근

무

하

고

주

3

시

간

이

상

강

의

하

고

교

육

경

력

과

연

구

경

력

을

고

려

하

여

보

수

지

급

되

므

로

,

비

상

근

교

직

원

이

아

니

라

고

한

다

.